

# 「2014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」 신청안내

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「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」를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
## 목적

-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
-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
-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

## 개요

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?  
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·중견기업을 ‘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’으로 인증하고,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

## 신청자격

- 보상규정을 보유하고,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
  - ※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- ※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

## 인증절차



## 심의기준

- 평가 기준 : 직무발명보상규정(20점), 보상실적(40점), 운용의 합리성(40점)
- 인증 기준 : 심의위원회를 구성,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

## 인센티브

- 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 자격 부여
-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
  - (특 허 청) 민간 IP-R&D 연계전략 지원사업,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,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,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등
  - (중소기업청)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, 융복합기술 개발사업, 상용화기술 개발사업,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, 제품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 등
  - (미래창조과학부) 모바일융합제품화 기술개발 및 R&D역량강화사업, SW공학 기술현장 적용지원사업, IT중소기업 공동 애로 해소지원사업
- 사용자입장 : 연구개발비용으로 법인세세액공제 (조세특례제한법 제9조, 제10조)
- 발명자입장 :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혜택(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)
  - ※ 인증 중소·중견기업의 4~6년분 등록료 감면(2년간) (2014.03.01일부터)

## 신청접수

- 접수 기간 : 2014년 3월 3일부터 연중수시 접수 (발급수수료 : 무료)
-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  - 온라인신청 :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(www.kipa.org) → 참여마당 → 사업신청
- 신청 문의 : 지식재산진흥부(02-3459-2845, 2793/e-mail : 2845@kipa.org)